

1 예산총칙

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13,305,579,000	399,167,370
일 반 회 계	11,841,820,000	355,254,600
특 별 회 계	1,463,759,000	43,912,770
기 타 특 별 회 계	1,463,759,000	43,912,770
의 료 급 여 기 금	693,500,000	20,805,000
치 수 사 업	5,650,000	169,500
광 역 교 통 시 설	3,311,000	99,330
발 전 소 등 지 역 자 원 시 설 세	119,307,000	3,579,210
학 교 용 지 부 담 금	14,832,000	444,960
낙 후 지 역 발 전	10,483,000	314,490
소 방	616,676,000	18,500,28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.